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6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민홍철·강준현·오세희

정진욱 • 양부남 • 김정호

민형배 • 김 현 • 박지원

김태선 • 전재수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수도권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생활권 단일화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인구감소와 지역소

멸 위기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특히,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울・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필요함.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창원에서 출발해 울산광역시를 잇는 철도로,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것임.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동남권 동일 생활·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

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동 남권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이 법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 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실시계획·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시・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 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사. 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100분의 70 이상을, 운영비용은 전액을 부담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 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자.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40%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고, 동남권 산업벨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남권순환광역철도"란 경상남도의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등 주요 도시와 울산광역시를 잇기 위해 건설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로서 경상남도 창원시를 시작으로 양산시, 김해시 등을 거쳐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말한다.
- 2.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이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 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 마. 그 밖에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남권순환광역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 1. 경상남도·울산광역시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철도의 유기적 기능 발휘 및 복선전철 추진
 - 2. 철도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 3.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화합 도모
-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2장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지원 등

-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 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제12조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수요 예측
 - 2. 광역철도 건설의 경제성 · 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7. 환경의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
 - 8. 지진 대책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계획으로 본다.

- 제9조(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동남권순환광역철 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 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 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면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 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18.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

다)

-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시·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100분의 70 이상을 부담하며,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운영비용은 전액을 부담한다.
 - ②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 재정 지원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 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6조(지역업체 참여 확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하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 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 제18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 제22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 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